

교육전문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 1 정	2013. 2.21	규 정	제362호
1차 개정	2013. 4.15	규 정	제391호
2차 개정	2013.12.4	규 정	제465호
3차 개정	2015. 2.27	규 정	제515호
4차 개정	2016. 6.24	규 정	제580호
5차 개정	2016.11.10	규 정	제594호
6차 개정	2017.12.7	규 정	제615호
7차 개정	2018. 2.20	규 정	제621호
8차 개정	2018. 7.16	규 정	제645호
9차 개정	2019. 9. 9	규 정	제678호
10차 개정	2019.12.16	규 정	제693호
11차 개정	2020. 6.29	규 정	제704호
12차 개정	2021. 2.23	규 정	제747호
13차 개정	2021. 6.17	규 정	제755호
14차 개정	2021. 8.23	규 정	제758호
15차 개정	2021.10.14	규 정	제770호
16차 개정	2022. 8.12	규 정	제786호
17차 개정	2023. 6.12	규 정	제815호
18차 개정	2024. 2. 6	규 정	제834호
19차 개정	2024. 6. 7.	규 정	제84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입학전형

제3조(모집요강)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모집요강에 따라 모집하되, 모집요강은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전형계획 수립) 교육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은 입학전형 실시일 30일 이전에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서류)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

해진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교원자격증(모집 요강의 해당 전공 지원자) 사본 1부.
3.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모집 요강의 해당 전공 지원자) 1부
5. 교육청발행 경력증명서(특별전형지원자에 해당) 1부
6. 연구실적 및 수상경력 증명 서류(특별전형지원자에 해당) 1부
7. 교육감추천서 및 학업계획서(교육감추천특별전형지원자에 해당) 1부

제6조(전형방법) ①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평가요소와 반영비율 등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특별전형은 교직경력이 석사과정은 5년, 박사과정은 1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③ 석사과정의 교육감추천 특별전형은 초등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형일 기준 교직경력 5년 이상이면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7조(전형위원) 전형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 중에서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합격자 결정) ① 특별전형, 일반전형 각각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전공별 모집 정원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전공의 모집 정원을 증감하여 선발 할 수 있다.

②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결

정한다.

제9조(입학등록금 납부) 합격자로 확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합격을 취소한다.

제3장 수업 및 학점이수

제10조(등록금 납부)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① 전공주임교수는 해당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 및 담당교수를 결정하고, 교과목 담당 교원은 별도의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이나 취소는 야간제 대학원은 개강 후 2주 이내, 계절제 대학원은 개강 후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제 대학원과 계절제 대학원 간의 변경 신청은 야간제 대학원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수업운영) ① 수업시간의 표시는 교시로 하며, 교시당 수업시간은 50분으로 한다.

② 학교의 수업일수는 주간제 및 야간제는 학기당 15주 이상, 계절제는 방학기간 내에 학기당 15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과목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하되, 실습·참관 등으로 집중이수 수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5주(또는 5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절제 수업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복수)학위과정 수업은 1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 시작 전 사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⑤ 제2항의 집중이수 수업의 1일 최대 인정시수는 총수업시수의 5분의 1이내로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온라인 학위과정에 대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원격수업) ① 원격수업은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실시간 화상수업: 실시간 화상 플랫폼을 통해 강의가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2. 콘텐츠 활용 수업: 미리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원격교육관리위원회가 승인한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는 원격수업

② 콘텐츠 활용 원격수업의 1차시당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은 평균 25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③ 원격수업은 제11조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 내 운영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총 이수시간(차시)의 3분의 2이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에 따른 교과목은 매 학기 총 이수시간(차시)의 3분의 2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육과정 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원격수업 일수 제한 기준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해당 차시 전체를 외부 콘텐츠로 구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직접 제작한 콘텐츠 내 외부 콘텐츠를 일부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제작한 전체 콘텐츠 진행(재생) 시간의 2분의 1이내에서 허용한다.

⑥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를 위해 원격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12조의2(원격수업교과목) ① 원격수업교과목은 온라인 학위과정 교육과정으로 승인된 교과목과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으로 한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의 폐강 및 분반 기준은 대면수업교과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의3(원격수업의 출석, 평가 및 이수 등) ① 담당교원은 실시간 화상 원격수업의 출석 여부 또는 콘텐츠 활용 원격수업의 학습 진행률, 그 외 학습활동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② 원격수업교과목의 성적평가 기준 및 이수 기준은 대면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원격수업교과목을 통해 이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전공
2. 교육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제12조의4(원격수업의 콘텐츠 저작권) ①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과 활용은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사용권은 개발자와 우리 대학이 공동으로 갖는다.

제12조의5(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사항) ① 원격수업의 운영 과정에서 대학 및 구성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이수단위)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교육과정)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영역별 이수 학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열·전공별 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

제15조(타 전공교과 학점인정) ① 대학원 전공분야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9학점 이내에서 다른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4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과정의 경우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2학점까지 타 전공교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16조(출석시수) 학생은 학기마다 총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인원)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석사과정은 최저 5명 이상, 박사과정은 최저 2명 이상으로 한다. 수강인원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8조(중복이수시의 학점인정) 학생이 이미 학점을 취득한 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만 인정한다.

제19조(계절제의 과제물 부과) 계절제 학생에게는 학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과목담당교수가 매학기 개강 전에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강의평가) ① 총장은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환류, 평가하기 위해 학기 종료 후 교과목별로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학생은 지정된 기간 중에 대상 교과목별로 강의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라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에게 확정 전 성적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강인원이 5인 이하인 강좌
2. 논문연구
3.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

제21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자가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재입학 후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수료증명서 발급) 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학칙에 서 정한 수료증서 또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과정

제23조(모집전공 및 인원) 모집전공은 석사과정의 전공에 준하여 석사과정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집한다.

제24조(제출서류)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제25조(휴학) 연구과정의 휴학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6조(수강과목) 연구과정의 수강과목은 해당 전공에 개설된 과목 중 매학기 6학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3학점 범위 내에서 타 전공을 수강할 수 있다.

제27조(수강료) 연구과정의 수강료는 석사과정의 납입금과 동일하다.

제28조(연구과정 이수증)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정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공개강좌

제29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과목 및 수강 등) ①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시간, 수강인원, 장소, 그 밖의 사항은 개설할 때마다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

아 발표한다.

② 공개강좌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필요할 경우 연중 계속하는 상설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31조(수강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생 납입금의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15호, 2017.12.7.>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621호, 2018.2.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5호, 2018.7.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78호, 2019.9.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3호, 2019.1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4호, 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0학년도 1학기에 진행되는 수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47호, 202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규정 제11조의2 제6항의 삭제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55호, 2021.6.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8호, 2021. 8. 23.>

이 규정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70호, 2021. 10. 14.>

이 규정은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86호, 2022.8.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5호, 2023.6.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4호, 2024.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5호, 2024. 6.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9.9., 2021.8.23., 2021.10.14., 2024.2.6., 2024.6.7.>

석사·박사과정 영역별 이수학점 (제14조 및 제15조제2항 관련)

과정	계열	영역별 이수학점				비고
		전 공	타전공	논문 연구	계	
석사 과정	교육학	21 이상			27 이상	
	교과교육학	* 특수교육전공(자격과정), 학교상담전공(자격과정)은 30 이상	0~9	-	*특수교육전공(자격과정), 학교상담전공(자격과정)은 30 이상	논문: P/F제
	글로벌융합 인재교육학					
박사 과정	교육학	27 이상	0~9	6	42 이상	논문: P/F제
	교과교육학					

- ※ 박사과정의 연구방법 영역은 타전공 박사과정의 연구방법 영역도 전공으로 인정한다.
- ※ 석사과정의 경우 학사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 15학점 이상, 타전공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연 제 호

연구과정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 (직인)